

포상 규정

개정 2024. 12. 10
개정 2023. 05. 11
개정 2022. 03. 22
개정 2019. 07. 23
개정 2019. 06. 12
제정 2014. 05. 08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(이하 본 학회라 한다) 시행세칙 제8조에 의거하여 포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의 종류 및 시상) ①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상을 제정하여 시상한다.

1. 학술상은 본 학회 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학회지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자를 선정하여 매 짝수년도에 수여한다.
 2. 기술상은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분야의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기술향상에 현저한 공로와 업적이 탁월한 자를 선정하여 매 짝수년도에 수여한다.
 3. 신진연구자상은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분야의 학술 및 산업발전과 전도유망한 신진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높이고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 40세 이하 신진연구자를 선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.
 4. 학회지 우수논문상은 본 학회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 연구논문과 기술논문을 대상으로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.
 5. 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은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연구분과별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차기 학술발표회에서 수여한다.
 6. 공로상은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와 단체를 선정하여 매 홀수년도 정기총회에 수여한다.
 7. 학회지 발전기여상은 JNFCWT에 게재된 논문 중 교신저자로 학회지 발간 및 발전에 공로가 큰 자를 선정하여 매 홀수년도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.
 8. 학회지 최다리뷰상은 JNFCWT에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논문을 심사완료한 자를 선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.
- ② 각 상의 수상자에게는 포상의 이유를 명기하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소정의 상금을 줄 수 있다.

제3조(수상 후보자 추천) ①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포상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수상자를 선정하는 포상위원회 위원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.

1. 학술상/기술상/신진연구자상
가. 정회원 3인 이상

- 나. 기 수상자
 - 다. 연구분과위원장
 - 라. 편집분과위원장
 - 마. 법인회원 대표
2. 공로상
- 가. 정회원 3인 이상
 - 나. 연구분과위원장
 - 다. 법인회원 대표
 - 라. 학회 임원
- ②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서면으로 하며, 추천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포함하여야 한다.
1. 학술상/기술상/신진연구자상
- 가. 후보자 인적사항
 - 나. 업적 명칭 및 전문 분야
 - 다. 추천 사유
 - 라. 저널발표논문 각 1부(학술상) / 주요 업적 내용 및 우수성(기술상)
2. 공로상
- 가. 후보자 인적사항
 - 나. 추천사유
 - 다. 학회활동내역

제4조(수상 후보자 심사 및 최종 수상 후보자 선정) ① 본 학회는 수상자 선정을 위해 포상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를 두어,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.

② 위원회는 후보자 심사 시 제1조 목적 및 제2조 상의 종류에의 부합여부와 업적 및 장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, 평가에 필요한 세부 심사기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.

③ 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서류를 검토한 후 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 포상자 심사기준에 따라 각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 평가를 실시하여, 최다 득점순으로 3배수를 최종 수상 후보자로 정해 회장에게 복수 추천한다.

④ 위원회는 최종 수상 후보자 선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반드시 서류로 남겨 사무국에 비치, 보관하여야 한다.

제5조(포상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포상위원회는 부회장(5인)과 편집이사 2인, 대외협력이사 2인 총 9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포상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이 정한다.

③ 포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, 필요시 개최한다.

제6조(수상자 확정) 회장은 최종 수상후보자에 대한 추천 및 심사과정의 적절성과 적격성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한다. 다만, 추천이 없거나 심사 또는 심의·확정 과정에서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(수상 제한) ① 학술상, 기술상, 신진연구자상, 공로상은 동일인에게 같은 상을 2회 이상 수여하지 아니한다.

② 학술상, 기술상, 신진연구자상은 포상 추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학술상, 기술상 또는 신진연구자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지 않는다.

제8조(예외적용) ① 학회지 우수논문상과 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의 경우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상자 추천 및 선정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.

② 학회지 발전기여상과 학회지 최다리뷰상은 후보자 모집공고, 후보 추천 등의 과정을 생략하고 편집위원회가 후보자를 발굴·심사하여 회장에게 추천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개정 포상규정 제2조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개정 포상규정 제2조 및 제7조는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